

문화관광실

민원사무목록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일수	페이지
1	문화관광실	공연장 (변경)등록	3일	6
2	문화관광실	출판사 (변경)신고	3일	8
3	문화관광실	인쇄사 (변경)신고	3일	10
4	문화관광실	관광사업 휴업(폐업) 신고	1일	12
5	문화관광실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민원에따라 다름(2~7)	14
6	문화관광실	관광사업 등록	민원에따라 다름(5~14)	17
7	문화관광실	관광사업 변경등록	4일	20
8	문화관광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3일	22
9	문화관광실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3일	25
10	문화관광실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3일	27
11	문화관광실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3일	29
12	문화관광실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3일	31
13	문화관광실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14일	33
14	문화관광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민원에따라 다름(12~15)	36
15	문화관광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민원에따라 다름(12~15)	39
16	문화관광실	영화상영 (변경)신고	즉시	42
17	문화관광실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3일	44

연번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처리일수	페이지
18	문화관광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3일	46
19	문화관광실	비디오물영업 폐업 신고	1일	48
20	문화관광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3일	50
21	문화관광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3일	52
22	문화관광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일	54
23	문화관광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3일	56
24	문화관광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3일	58
25	문화관광실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3일	60
26	문화관광실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폐업신고	1일	63
27	문화관광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3일	65
28	문화관광실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3일	67
29	문화관광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3일	69
30	문화관광실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3일	71
31	문화관광실	노래연습장업 등록	3일	73
32	문화관광실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3일	75
33	문화관광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신고	3일	78

공연장 등록 · 변경등록

사무내용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신규등록 : 7일 변경등록 :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1부 ◦ 시설설치 내역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현지확인(문화관광실) → 결 재 → 등록증 교부(문화홍보담당관실)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현지확인 ◦ 기 타 			

공연장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	------	------	------------------

설치자	①기관·법인·단체명 ②기관·법인·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

운영자	③대표자성명 ⑤대표자주소 (전화번호 :)	④생년월일
-----	-------------------------------	-------

⑥공연장의 명칭	⑦종류 및 운영 형태	[] 공공 공연장 [] 직업 [] 수탁 공연장 [] 양여 [] 민간 공연장 [] 자가 [] 입차
----------	-------------	---

⑧공연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⑨공연장 착공일자	⑩공연장 사용승인 일자
-----------	--------------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 (※ 무대기계·기구 수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의 고시에 따라 산출 기재)	건축면적	㎡(평)	무대면적	㎡(평)
	무대기계·기구수	구동식		개
		고정식		개
객석수	개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	㎡(평)	

⑫등록번호	⑬등록연월일	. . .
-------	--------	-------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⑮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등록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신규등록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 : 「공연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

사무내용	출판사 신규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1항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12. 24.>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변경신고시 : 출판사 신고필증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문화관광실) →결재→ 신고필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출판사의 명칭·소재지 확인 ▪ 건축물대장등본 확인(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 			

출판사 []신고서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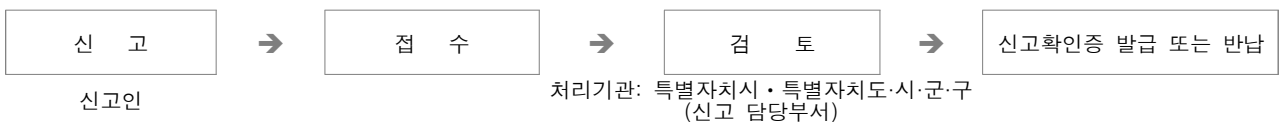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원
------	-----------------------	---

유의 사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

사무내용	인쇄사 신규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제1항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15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변경신고시 : 인쇄사 신고필증 *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문화관광실) →결재→ 신고필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사의 명칭 · 소재지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500㎡ 이상 공장, 미만 제조업)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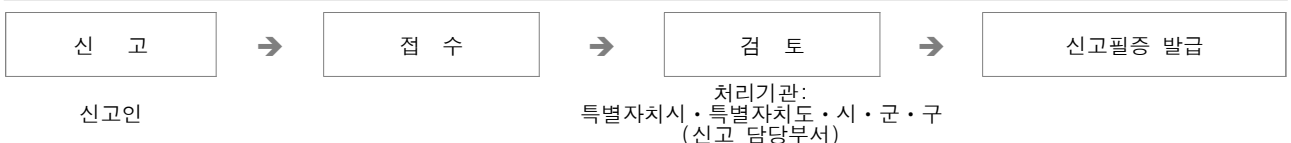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그 변경 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광사업 휴업(폐업) 신고

사무내용	관광사업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문화관광실) → 결재 → 휴·폐업 통보(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통보서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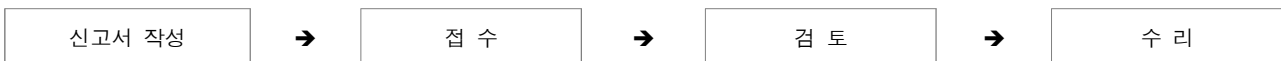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참고사항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첨부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 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민원에 따라 다름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진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1부 ◦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현지확인(문화관광실) → 결재 → 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 수수료 : 2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 사실 확인 ◦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고지여부 확인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 시설업 : 5일 ○ 카지노업 : 7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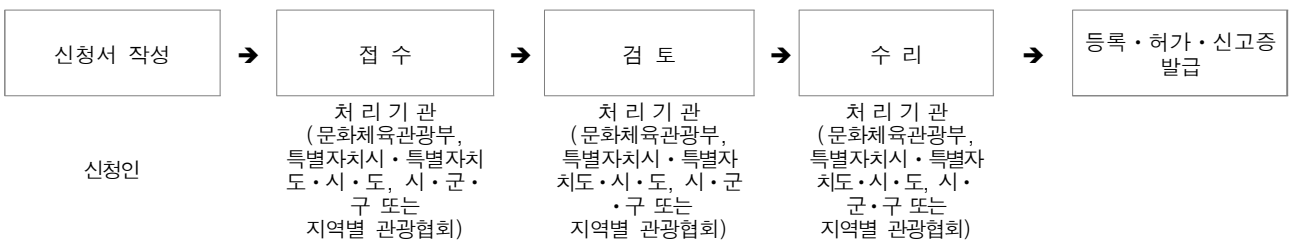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제출서류	뒤쪽 참조(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포함)	수수료 20,000원
------	---	----------------

처리절차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Table with 3 columns: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Table with 3 columns: 적발일,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Main table with 2 columns: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Contains detailed requirements for document submission and verification.

관광사업 등록

사무내용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민원에 따라 다름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 성명·주민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현지확인(문화관광실) → 결재 → 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 : 3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현지확인 ◦ 기 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p style="text-align: right;">수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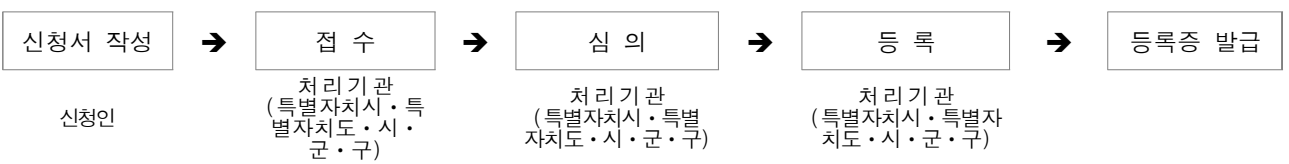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p>여행업 및 국제회의의 기획업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p>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여행업 및 국제회의의 경우</p> <p>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의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사업 변경등록

사무내용	관광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문화관광실) → 결재 → 변경 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내용 검토 ◦ 기 타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사무내용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민원에 따라 다름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안전성검사 증명 서류 1부 ◦ 안전관리계획서 1부 ◦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증명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현지확인(문화관광실) → 결재 → 허가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원시설업 : 6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 5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현지확인 ◦ 기 타 			

유원시설업 [] 허가신청서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에는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 표 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 기기구 종수	안전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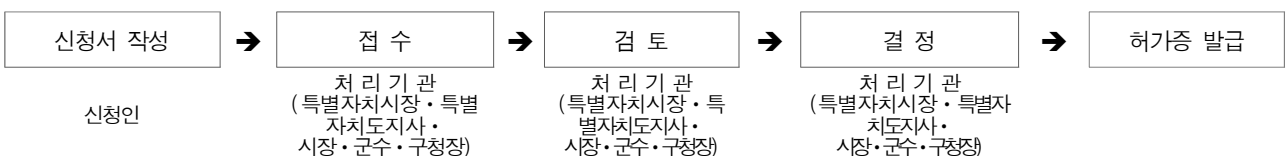
대상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 수 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5.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 허가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사무내용	유원시설업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1부 ◦ 허가증 1부 ◦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문화관광실) → 결재 → 변경 허가증 교부(문화관광실)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원시설업 : 3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허가내용 검토 ◦ 기 타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에는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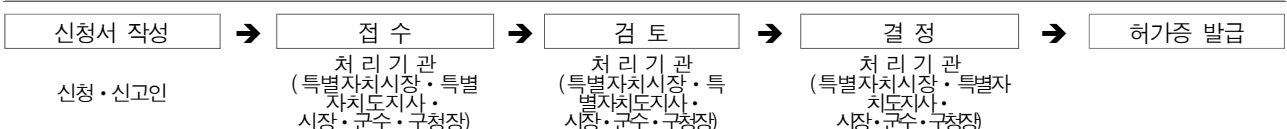
대상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서류	내용	비고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증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설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제외)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신설·이전·폐기
-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
 -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 다.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라. 안전성검사 대상은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
 -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사무내용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험가입 증명 서류 1부 ◦ 안전관리 계획서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문화관광실) → 결재 → 신고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3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계획 등 신고내용 검토 ◦ 기 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 업 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 기 시 설 또는 유 기 기 구 종 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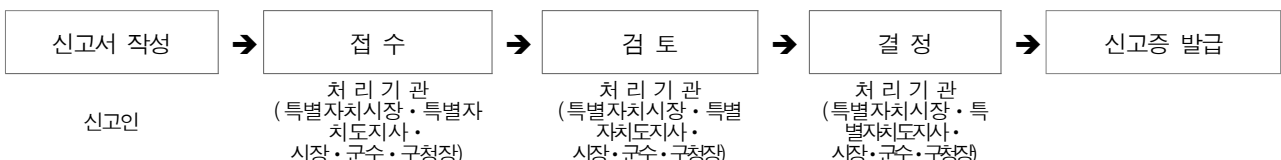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상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사무내용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1부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증 1부 ◦ 유원시설업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문화관광실) → 결재 → 변경 신고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15,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청내용 검토 ◦ 기 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 업 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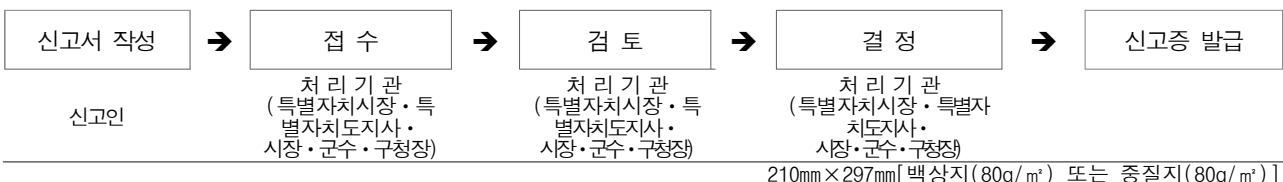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영업장 밖으로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니나 정기 확인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재개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폐기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라.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나 정기 확인 검사가 필요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영업장폐쇄명령 등)

처리절차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사무내용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담당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재발급 신청서 1부 ◦ 등록증, 허가증 또는 지정증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문화관광실) → 결재 → 등록증 재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 수수료 : 3,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기존 등록·허가·지정여부 확인			

등록증 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④ 상 호 (명 칭)				
⑤ 업 종				
⑥ 영 업 소 소재 지				
(전화:)				
⑦ 등록(허가)번호				
⑧ 등록(허가)연월일				
⑨ 재 발 급 사 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60%;"> <p>「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p> <p>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청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서명 또는 인)</p> </div> <div style="width: 35%;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p style="font-size: 0.8em;"> <input type="checkbox"/> 관 광 사 업 등 록 증 <input type="checkbox"/> 카 지 노 업 허 가 증 <input type="checkbox"/> 관 광 편 의 시 설 업 지 정 증 <input type="checkbox"/> 유 원 시 설 업 허 가 · 신 고 증 </p> </div> <div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의</p>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font-size: 0.8e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p> </div> <p style="margin-left: 100px; margin-top: 10px;">귀하</p>				
※ 구비서류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사무내용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1부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문화관광실) → 결재 → 지정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록·허가·지정여부 확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7. 10.>

[] 지정 신청서 관광 편의시설업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에는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영업소 소재지			
자본금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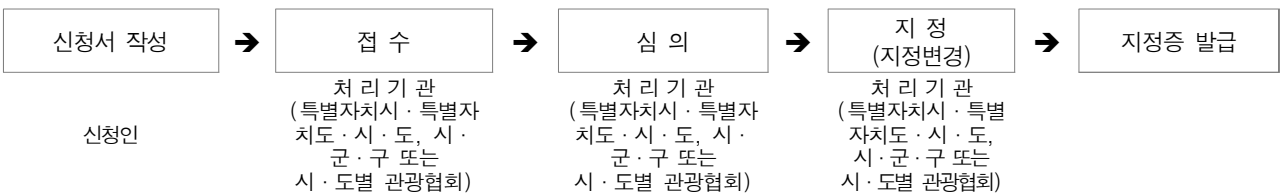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20,000원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p>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무내용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 12일 그 외 : 15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1부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건설계획서 2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문화관광실) → 결재 → 사업계획 승인(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5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계획서 적합 여부 등 확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일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 ○ 관광객 이용시설업: 15일 ○ 국제회의시설업: 15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종			
건설장소			
시설규모			
소요자금			
준공예정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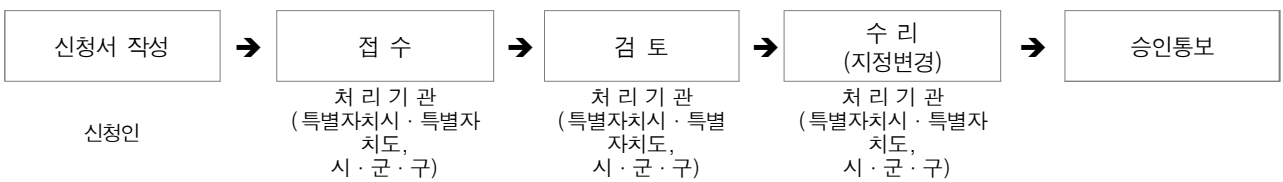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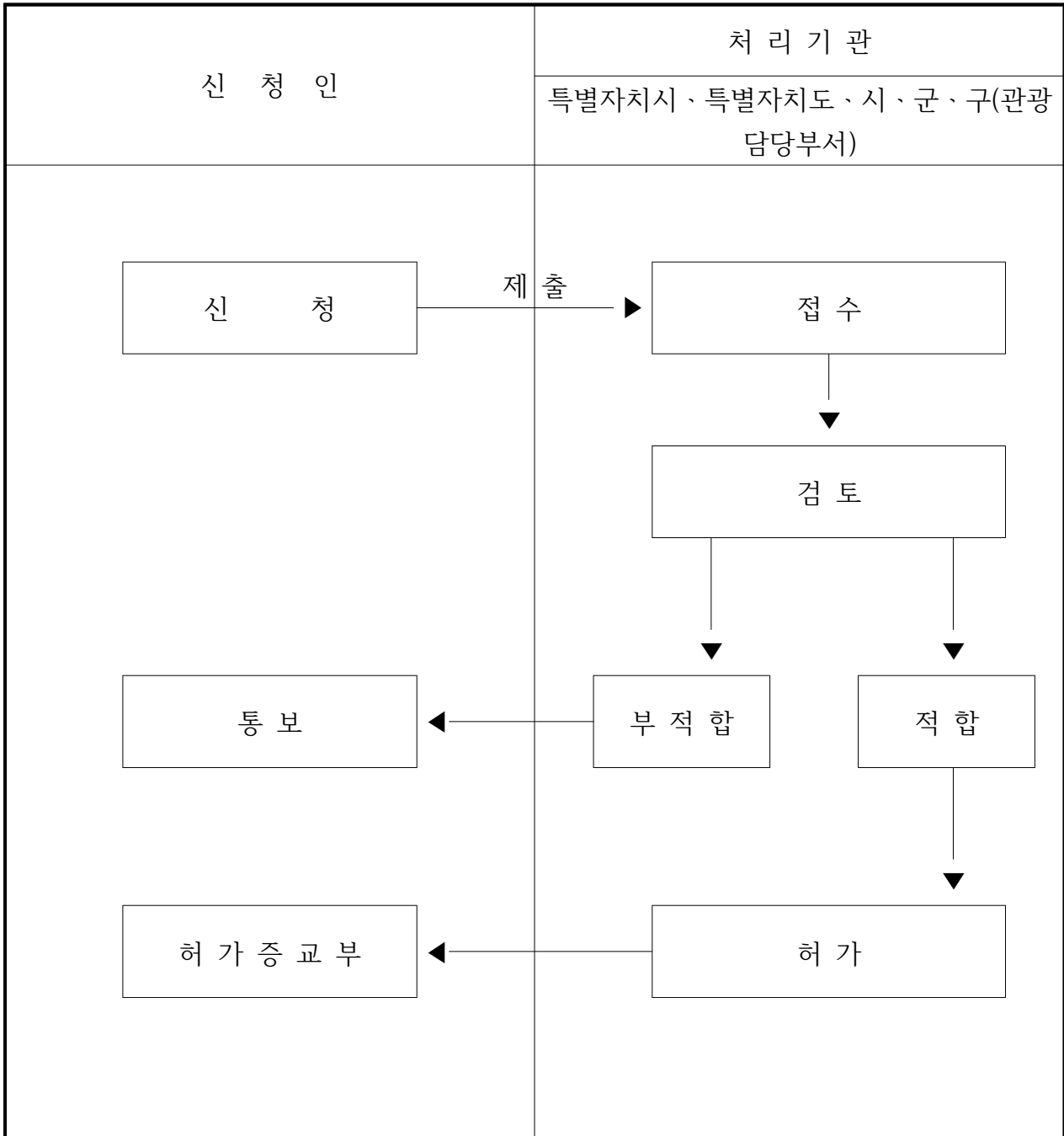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나. 공사계획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마. 조감도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 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승인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7.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p>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사무내용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관광진흥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72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 12일 국제회의시설업 : 14일 관광객이용시설업 : 15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1부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변경사유서 2부 ◦ 변경 전·후의 평면도 2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행복민원과) → 검토(문화관광실) → 결재 → 사업계획 변경 승인(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50,000원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내용 적합 여부 등 확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영화상영[신규 · 변경] 신고

사무내용	영화상영 신규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4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없 음			
업무처리 흐 림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문화관광실) →결재→ 신고필증 교부(문화관광실)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영화 등급자료 확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상영 [] 신고 [] 변경신고 서

* 표시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원 제목 (번역제목)		사용제목	
영화 상영기간		상영장소	
관람요금			
영화상영 등급분류 결정사항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원작자 (국적)	감독 (국적)	
	제작자 (국적)	영화의 종류	
*변경 사항 및 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 상영의 []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 부서)

영화상영관 등록 · 변경등록

사무내용	영화상영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신규등록 : 7일 변경등록 :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1부 ◦ 시설설치 내역서 1부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필증 사본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사본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현지확인(문화관광실) → 결 재 → 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현지확인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확인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관련(해당지역 119안전센터 문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장흥교육청 ☎ 061-860-1231)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12. 5.>

영화상영관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영화상영관의 명칭		상영물의 종류	
영화상영관 소재지		전화번호	
영화상영관 착공일	영화상영관 준공일	전체 관람자 정원	
전체 시설규모	부지면적	m ² , 연건축면적	m ² , 지하 층, 지상 층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p>※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p>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가 정한 금액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 건축물대장 등본 	

유의사항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

사무내용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도양수서(양도 양수인 경우)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현지확인(문화관광실) → 결 재 → 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관련(해당지역 119안전센터 문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발급관련(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장흥교육청 ☎ 061-860-1231)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

변경등록 신청내용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m ²)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m ²)	
	변경사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가 정한금액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디오물 영업 폐업 신고

사무내용	비디오물 영업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 제64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1부 ◦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반납 			
업무처리 흐 림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 결재 → 폐업 수리 통지 (문화관광실)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업종		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사유			
폐업 연월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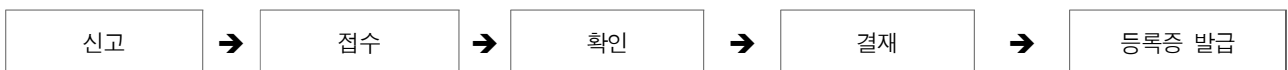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흥 군 수 귀 하

신고인(대표자) 첨부 서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 부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사무내용	일반게임제공업 신규 허가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부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6조제1항 		
사전확인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만 해당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미만)인 경우 교육청에 정화구역해제 심의의뢰 장흥교육청 환경정화구역도 https://cleanupzone.edumac.kr/ 확인 일반게임제공업은 초·중·고 상대정화구역만 적용(유치원, 대학은 상관없음) ◦ 건축물 대장 확인 : 건축물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 ※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용도상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으로 표시변경(건축과 문의) ◦ 지리정보시스템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모든 주거지역 신규등록 불가 ◦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 위치시 신규등록 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 초과여부 ※ 민원접수시 경찰서 생활안전계 ☎ 061-860-7346전화 연락 ◦ 영업장내 금연구역 100% 설치 ◦ 영업장내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설치기준 별첨) ◦ 투명유리창 설치(투명유리창이 곤란하면 투명방화문 설치)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제공하는 게임물명, 등급심의번호, 건물 평면도 포함) ◦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및 게임설명서 각 1부 (게임기마다 1~00번호 및 등급번호가 부착되어야 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사본 및 소방교육확인서 1부(1층은 제외)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문화관광실) →접수(수수료 20,000원/행복민원과)→결재(문화관광실)→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 현지확인시 “게임물 설명서” 대로 기계 내부·외부 사진 및 작동방법 확인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 국민주택채권 20,000원 매입 별도(시중 은행)<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 용도 : 게임제공업 인허가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현지확인 ▪ 게임물 등급 분류 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 http://www.grb.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관련(해당지역 119안전센터 문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장흥교육청 ☎ 061-860-1231)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m ²)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i>*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사무내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6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업소는 신규등록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미만)인 경우 교육청에 정화구역해제 심의의뢰 장흥교육청 환경정화구역도 https://cleanupzone.edumac.kr/ 확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초·중·고/유치원·대학 상대정화구역에 적용 ◦ 건축물용도 : 면적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이상 판매시설 ※ 복합유통은 건축물대장 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표시변경(건축과 문의) ◦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 위치시 신규등록 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 초과여부 ◦ 청소년유해업소 영위하는 자는 복합유통게임업 등록 불가 ◦ 영업장내 금연구역 100% 설치 ◦ 영업장내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설치기준 별첨) ◦ 투명유리창 설치(투명유리창이 곤란하면 투명방화문 설치)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및 소방교육확인서 각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수수료 20,000원/행복민원과)→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문화관광실)→결재(문화관광실)→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 국민주택채권 20,000원 매입 별도(시중 은행)<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 용도 : 게임제공업 인허가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현지확인 ▪ 게임물 등급 분류 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 http://www.grb.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관련(해당지역 119안전센터 문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장흥교육청 ☎ 061-860-1231)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m ²)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small>*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small>	

업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를 합니다.

-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구성 업종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사무내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부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6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미만)인 경우 교육청에 정화구역해제 심의의뢰 장흥교육청 환경정화구역도 https://cleanupzone.edumac.kr/ 확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초·중·고/유치원·대학 상대정화구역에 적용 ◦ 건축물용도 : 면적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이상 판매시설 ※ 복합유통은 건축물대장 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표시변경(건축과 문의) ◦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 위치시 신규등록 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 초과여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및 소방교육확인서 각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수수료 20,000원/행복민원과)→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문화관광실)→결재(문화관광실)→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 국민주택채권 20,000원 매입 별도(시중 은행)<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 용도 : 게임제공업 인허가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현지확인 ▪ 게임물 등급 분류 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 http://www.grac.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관련(해당지역 119안전센터 문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장흥교육청 ☎ 061-860-1231)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사무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부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6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이용가 게임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만 해당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미만)인 경우 교육청에 정화구역해제 심의의뢰 장흥교육청 환경정화구역도 https://cleanupzone.edumac.kr/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초·중·고 상대정화구역만 적용(유치원, 대학은 상관없음) ◦ 건축물용도 : 청소년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500㎡이상 판매시설 ※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용도상 「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로 표시변경 (건축과 문의) ◦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 위치시 신규등록 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 초과여부 ※ 민원접수시 경찰서 생활안전계 ☎ 061-860-7346전화 연락 ◦ 영업장내 금연구역 100% 설치 ◦ 영업장내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설치기준 별첨) ◦ 투명유리창 설치(투명유리창이 곤란하면 투명방화문 설치)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및 소방교육확인서 각 1부(1층은 제외)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제공하는 게임물명, 등급심의번호, 건물 평면도 포함) ◦ 일반적인 오락실이 아닐 경우 :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및 게임설명서 각 1부 (게임기마다 1~00번호 및 등급번호가 부착되어야 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수수료 20,000원/행복민원과)→ 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문화관광실) → 결재(문화관광실)→ 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 현지확인시 “게임물 설명서” 대로 기계 내부·외부 사진 및 작동방법 확인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 국민주택채권 20,000원 매입 별도(시중 은행)<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 용도 : 게임제공업 인허가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현지확인 ▪ 게임물 등급 분류 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 http://www.grb.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관련(해당지역 119안전센터 문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장흥교육청 ☎ 061-860-1231)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m ²)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i>*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 도 · 시 · 군 · 구 조례 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사무내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부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6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200m미만)인 경우 교육청에 정화구역해제 심의의뢰 장흥교육청 환경정화구역도 https://cleanupzone.edumac.kr/ 확인 인터넷게임제공업은 초·중·고 상대정화구역만 적용(유치원, 대학은 상관없음) ◦ 건축물용도 : 면적 3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이상 판매시설 ※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용도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로 표시변경 (건축과 문의) ◦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 초과여부 ◦ 영업장내 금연구역 100% 설치 ◦ 영업장내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설치기준 별첨) ◦ 투명유리창 설치(투명유리창이 곤란하면 투명방화문 설치)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및 소방교육확인서 각 1부(1층은 제외)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제공하는 게임물명, 등급심의번호, 건물 평면도 포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수수료 20,000원/행복민원과)→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문화관광실)→결재(문화관광실)→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 현장확인시 컴퓨터에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 깔렸는지 확인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 국민주택채권 20,000원 매입 별도(시중 은행)<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 용도 : 게임제공업 인허가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현지확인 ▪ 게임물 등급 분류 확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 http://www.grb.or.kr/Statistics/GameStatistics.aspx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관련(해당지역 119안전센터 문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장흥교육청 ☎ 061-860-1231)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i>*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i>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 도 · 시 · 군 · 구 조례 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사무내용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상 단
민원처리 부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26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또는 변경 신청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 초과여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청서 1부 ◦ 기존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반납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도양수서(양도 양수인 경우)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소재지 변경이 있을 경우만) ◦ 소방교육 확인서 1부(1층은 제외)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게임제공업의 경우만)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현지확인(문화관광실) → 결 재 → 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현지확인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사항 확인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관련(해당지역 119안전센터 문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관련(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장흥교육청 ☎ 061-860-1231)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
-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	------	-----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허가 ·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영업소 면적(m ²)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공장 소재지	변경 전		제작품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취급품목	변경 전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제공게임물	변경 전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사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 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계임제공업, 청소년계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계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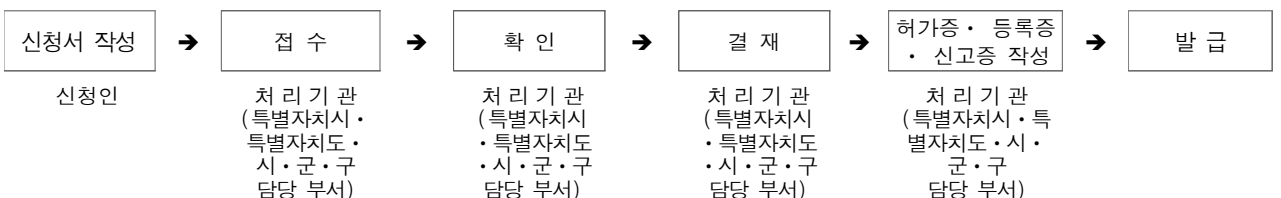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허가·등록·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게임물 관련사업자 폐업 신고

사무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1일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8., 2016. 12. 30., 2019. 2. 27.>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30.>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신고서 1부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반납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결재 → 폐업 신고 수리 통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일, 등록일, 또는 신고일)			
폐업일			
폐업사유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의 분실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사무내용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제작시설 · 장비 명세서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문화관광실) →결재→ 신고필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 음악 영상 제작물의 명칭 · 소재지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예외사항 해당여부 확인(별첨)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취급)품 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광역시·도 조례에 따라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음반 · 음악 영상물 배급업 신고

사무내용	음반 · 음악 영상물 배급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검토(문화관광실) →결재→ 신고필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없음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 음악 영상 제작물의 명칭 · 소재지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예외사항 해당여부 확인(별첨)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 장 소재지		전화번호
제작(취급)품 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시·광역시· 도 조례에 따라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사무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규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열린민원실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16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수수료 20,000원/행복민원과) →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문화관광실)→ 결재(문화관광실) →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 사업자 등록 확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수수료 시·군·구 조례에 따라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사무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21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1부 ◦ 기존 신고증 원본 반납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도양수서(양도 양수인 경우) 1부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수수료 5,000원/행복민원과)→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문화관광실)→결재(문화관광실) 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 변경(사업자 변경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현지확인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신고 내용	신고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 후	상 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노래연습장업 등록

사무내용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부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수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1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보호구역구역(200m미만)인 경우 교육청에 정화구역해제 심의의뢰 장흥교육청 환경정화구역도(민원인이 의뢰) https://cuз.schoolkeepa.or.kr/gis/gis.do?sggCd=4680000000 확인 노래연습장은 초·중·고 상대정화구역만 해제가능(유치원, 대학은 상관없음) ◦ 건축물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용도상 「노래연습장」 으로 표시변경 (건축계 문의) ◦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 위치시 신규등록 불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 초과여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1부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사본 1부 (총수 상관없음) ◦ 소방교육 확인서 사본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1부 ◦ 생활소음·진동의 방지장치(시설) 설치확인서 사본 1부 ◦ (상대정화구역에 해당시) 정화구역 해제 통보서 사본 1부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업무처리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수수료 20,000원/행복민원과)→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문화관광실)→결재(문화관광실)→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20,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시설기준 적합 여부 현지 확인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관련 (해당지역 119안전센터 문의)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정화구역 해제 관련 (장흥교육청 ☎ 061-860-1231) 처리기간 15일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충족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m ²)		() m ²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축된 실(室)의 수 ()개	청소년실	[]유,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래연습업장 변경 등록

사무내용	노래연습장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21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전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또는 신청인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 초과 여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신청서 1부 ◦ 기존 등록증 원본 반납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변경이 있는 경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 ◦ 양도양수서(양도양수인 경우)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사본 1부 (소재지 변경이 있을 경우만) ◦ 소방교육 확인서 사본 1부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시행규칙제5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2항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수수료 5,000원/행복민원과)→현지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문화관광실)→결재(문화관광실)→등록증 교부(문화관광실) ※ 변경(사업자 변경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현지확인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 면허세 별도(재무과에 통보 별도 부과)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교육 관련 (해당지역 119안전센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급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남남부지사 ☎ 1588-7500) ▪ 학교정화구역 관련(장흥교육청 ☎ 061-860-1231) ▪ 건축물 용도 및 소유자 확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변경 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m ²)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유 []무	
	변경 후	상호	영업자(생년월일)	
		영업소 면적(m ²)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개	
		영업소 소재지	청소년실 []유 []무	
	변경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p>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증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p>수수료</p> <p>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에 따라 ()원</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면적의 변경, 내부에 구축된 실의 수 변경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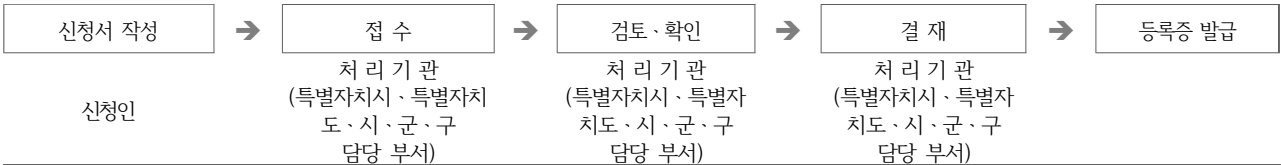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4. 종전 영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하여, 종전 영업자의 법률 위반으로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

사무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			상 단
민원처리 부 서	문화관광실 문화예술팀	접 수 처	행복민원과	
전화번호	061)860-5765	처리기간	3일(공휴일 제외)	
관련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신고서 1부 ◦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원본 반납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고증 원본 반납 			
업무처리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작성(민원인)→접수(행복민원과)→결재 → 폐업 수리 통지 (문화관광실) 			
수 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 없음 			
심사기준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폐업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 노래연습장업

영업 폐지일

년 월 일

폐 지 사 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수수료 없음
------	---	-----------